

# 제 1 부

##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재판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 제1장

# 분석목적 및 내용

## 1. 분석목적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판결은 분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이나 언론인에게 언론관련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또, 언론관련 판결의 내용은 언론분쟁 관련 법리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서 언론 분쟁의 추세 및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소송의 판결문에 나타난 법률적 판단 내용을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해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송제기 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정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언론분쟁의 법리적, 사회적 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자료수집 방법

###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검색 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 이용

판결의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sup>1)</sup>한 후, 법원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를 이용하였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권 ⑥보도&음성권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권 등으로 하였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성립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검색이 되지 않아 수집 및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분석대상

#### 가. 2012년도 분석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민사 118건

분석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등<sup>2)</sup>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이다.

이 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 그리고 이와 병합된 사건으로 분석 대상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집된 2012년도 분석 대상 판결은 총 118건이다.

####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각 개별사건 모두 분석 대상으로

판결 분석은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1심 사건과 그 상소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2012년 한 해 동안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심급에 관계 없이 판결 모두 개별사건으로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분석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 다. 여러 언론사가 공동 피소된 사건의 재판결과는 매체별로 구분하여 분석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별로 보도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사건을 피소된 언론사 매체별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매체별 분석 대상 판결 총 건수는 172건이다.

#### 라. 청구권별 처리결과 등은 매체별 총 건수 172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

한편, 분석대상 판결은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분석에서는 각각의 청구권별 처리결과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체별 총 건수 172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집계, 분석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청구권별 총 건수는 284건이다.

2) '언론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뜻한다.

## 4. 분석내용

본 보고서는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소송 제기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보도청구의 재판 결과, 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소송 제기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등

### 나. 재판 결과

심급별 재판 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재판 결과, 침해유형별 재판 결과, 원고유형별 재판 결과, 매체유형별 재판 결과,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등

###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

### 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재판 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등

###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2012년도 분석대상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 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

## 5. 분석을 위한 코딩항목 및 코딩방법

### 가. 코딩항목

분석 목록	구체적 분석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2. 선고일자 03. 법원명	04. 심급 05. 청구의 종류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8. 대표 원고 분류	09. 공적인물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1. 사건 피고분류 12. 매체명	13. 매체별 피고분류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체분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리결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1. 정정보도 17-2. 반론보도 17-3. 추후보도	17-4. 손해배상 17-5. 기사삭제 17-6. 사과
원 · 상소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1. 1심 18-2. 항소심	18-3. 상고심 18-4. 파기환송심 18-5. 재상고심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조정신청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직권조정 결정액
손해배상	23. 사건 청구액 24. 사건 인용액 25. 매체별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정정보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4. 보도위치	35. 보도제목 36. 보도본문 길이

### 나. 코딩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 분석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 1) 대표 원고 분류

- ① 원고가 다수인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하였다.
-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sup>3)</sup>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연예인·정치인·기업가·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 ④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 ⑤ 일반인과 공인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 2) 매체명 분류

- ①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였다면 2개의 매체에 대해 각각 코딩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의 소속 매체명을 기재하였다.

## 3) 매체별 피고 분류

- ①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 5) 방송 분류

- ① 지상파방송 중 지상파방송사의 지역방송총국 및 계열사<sup>4)</sup>와 지역민방은 지역방송으로 분류하였다.
-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하였다.
-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 ④ 「SBS 스페셜」, 「생방송 오늘아침」 등 다큐멘터리나 생활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양·정보로 분류하였다.

## 6) 청구별 처리결과

- ①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

3)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4) 예) KBS전주방송총국, 대구MBC 등

된 경우, 또는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 7)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 8)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하였다.

②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③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 제2장

# 소송제기 현황

2012년도 분석대상 판결 118건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55.9%, 항소심 28.0%, 상고심 16.1%

분석대상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건수를 살펴본 결과, 1심 판결이 66건(55.9%), 항소심이 33건(28.0%), 상고심이 19건(16.1%)으로 나타났다.

〈표 1-1〉 심급별 건수

심급	건수	비율(%)
1심	66	55.9
항소심	33	28.0
상고심	19	16.1
합계	118	100.0

### 2. 상소율

항소율 56.1%, 상고율 54.5%

분석대상 판결 중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66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37건으로 항소율은 56.1%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33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18건으로 상고율이 54.5%였다.

〈표 1-2〉 상소율

심급	건수	상소건수	상소율(%)
1심	66	37	56.1%
항소심	33	18	54.5%

### 3. 청구별 소송건수

####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통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78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60건(34.9%)으로 나타났다.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각각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는 151건(53.2%), 정정보도청구는 105건(37.0%), 반론보도청구는 13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원고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임을 알 수 있다.

〈표 1-3〉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	9	5.1
정정/반론	7	4.0
정정/반론/손해배상	5	2.9
정정/손해배상	78	45.3
정정/손해배상/사과	2	1.2
정정/기사삭제	2	1.2
정정/사과	2	1.2
반론	1	0.6
손해배상	60	34.9
손해배상/기사삭제	1	0.6
손해배상/기사삭제/보도금지	2	1.2
손해배상/기사삭제/사과	1	0.6
손해배상/보도금지	2	1.2
합계	172	100.0

〈표 1-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건수	비율(%)
정정보도	105	37.0
반론보도	13	4.6
손해배상	151	53.2
기사삭제	6	2.1
사과	5	1.7
보도금지	4	1.4
<b>합계</b>	<b>284</b>	<b>100.0</b>

####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은 명예훼손이 66.1%로 가장 많아

분석대상 판결에서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이 78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재산권 침해가 13건(11.0%), 명예훼손 및 모욕, 사생활 침해가 각 4건(3.4%), 초상권 침해 3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예	78	66.1
명예/모욕	4	3.4
명예/사생활	2	1.6
명예/재산권	1	0.9
명예/초상	3	2.5
명예/초상/모욕	1	0.9
명예/초상/사생활	1	0.9
초상	3	2.5
초상/음성	1	0.9
초상/음성/사생활/모욕	1	0.9
사생활	4	3.4
재산권	13	11.0
저작권	3	2.5
기타	3	2.5
<b>합계</b>	<b>118</b>	<b>100.0</b>

##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은 일반인이 39.8%, 공직자 15.3% 순으로 나타나

언론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47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직자 18건(15.3%), 언론사 15건(12.7%) 순이었다. 그 외 공적 인물 12건(10.2%), 일반단체 11건(9.3%) 등으로 나타났다.

〈표 1-6〉 원고유형별 건수

원고유형	건수	비율(%)
공직자	18	15.3
공적 인물	12	10.2
일반인	47	39.8
국가기관	6	5.1
기업	9	7.6
언론사	15	12.7
일반단체	11	9.3
합계	118	100.0

##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는 인터넷매체가 45.9%로 가장 많아

분석대상 판결 118건 중 피고 언론사가 다수인 사건을 각 매체별로 나누어 집계한 분석대상 총 건수는 172건이었다. 172건에 대한 매체유형별 소송건수는 인터넷매체가 79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간신문 43건(25.0%), 방송 28건(16.3%)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30건(69.8%), 방송 중에는 지상파방송이 23건(82.1%)으로 소송건수가 많았다.

인터넷매체의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이 40건(50.6%), 언론사닷컴이 38건(48.1%)이었다.

〈표 1-7〉 매체유형별 건수

매체유형	건수	비율(%)
일간신문	43	25.0
주간신문	14	8.2
월간지	5	2.9
방송	28	16.3
뉴스통신	3	1.7
인터넷매체	79	45.9
<b>합계</b>	<b>172</b>	<b>100.0</b>

〈표 1-8〉 일간지 유형별 건수

일간지 유형	건수	비율(%)
중앙종합	30	69.8
지역종합	11	25.6
스포츠	2	4.6
<b>합계</b>	<b>43</b>	<b>100.0</b>

〈표 1-9〉 방송유형별 건수

방송유형	건수	비율(%)
지상파방송	23	82.1
지역방송	2	7.1
케이블	2	7.1
라디오	1	3.7
<b>합계</b>	<b>28</b>	<b>100.0</b>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건수

인터넷매체 유형	건수	비율(%)
인터넷신문	40	50.6
언론사닷컴	38	48.1
포털	1	1.3
<b>합계</b>	<b>79</b>	<b>100.0</b>

##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방송 외 매체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78.5%,  
방송은 뉴스가 42.9%로 가장 많아

분석대상 판결의 총 매체별 건수 172건에서 방송매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144건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인이 된 보도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13건(78.5%), 사설이 10건(6.9%)으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방송매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뉴스 12건(42.9%), 시사·고발프로그램 10건(35.7%), 교양·정보 3건(10.7%)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방송 외)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113	78.5
스트레이트/사설	6	4.1
스트레이트/인터뷰	1	0.7
사설	10	6.9
인터뷰	2	1.4
인터뷰/칼럼	2	1.4
칼럼	2	1.4
사진	1	0.7
광고	4	2.8
기타	3	2.1
<b>합계</b>	<b>144</b>	<b>100.0</b>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방송)	건수	비율(%)
뉴스	12	42.9
시사·고발	10	35.7
교양·정보	3	10.7
교양·정보 / 드라마	1	3.6
드라마	2	7.1
<b>합계</b>	<b>28</b>	<b>100.0</b>

## 8. 매체별 피고 분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47.1%를 차지

각 사건의 피고를 매체별로 나눈 172건을 대상으로 피고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언론사가 81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29건(16.9%)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피고 구성을 언론사 그리고 언론인의 직위별로 각각 구분한 후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사가 152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58건(20.6%), 비언론인 26건(9.2%), 대표이사 21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 매체별 피고 분류

매체별 피고 분류	건수	비율(%)
언론사	81	47.1
언론사/대표	6	3.5
언론사/대표/국장	1	0.6
언론사/대표/부장	3	1.6
언론사/국장/담당 기자	7	4.1
언론사/국장/부장/담당 기자	1	0.6
언론사/논설위원	1	0.6
언론사/논설위원/부장/담당 기자	1	0.6
언론사/부장/담당 기자	2	1.2
언론사/담당 기자	29	16.9
언론사/담당 기자/비언론	5	2.9
언론사/비언론	15	8.7
대표	4	2.3
대표/국장/논설위원/담당 기자/비언론	2	1.2
대표/국장/비언론	2	1.2
대표/담당 기자	3	1.6
논설위원/비언론	1	0.6
담당 기자	7	4.1
담당 기자/비언론	1	0.6
<b>합계</b>	<b>172</b>	<b>100.0</b>

〈표 1-14〉 매체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152	53.9
대표이사	21	7.4
국장	13	4.6
논설위원	5	1.8
부장	7	2.5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58	20.6
비언론	26	9.2
합계	282	100.0

# 제3장

# 재판 결과

분석 대상 판결의 재판 결과를 심급별, 청구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 보도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심급별 결과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원고승소율 46.6%, 원고패소율 53.4%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을 산정해 본 결과,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원고승소율은 46.6%, 원고패소율은 53.4%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원고패소율이 원고승소율보다 6.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들의 심급별 원고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 50.0%, 항소심 51.5%, 상고심이 26.3%로 각각 조사되었다.

한편,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심급별 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계
1심	33 (50.0)	33 (50.0)	66 (100.0)
항소심	17 (51.5)	16 (48.5)	33 (100.0)
상고심	5 (26.3)	14 (73.7)	19 (100.0)
합계	55 (46.6)	63 (53.4)	118 (100.0)

※ ( )안의 숫자는 %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 비율은 82.7%로 나타나

분석대상 판결 118건 중 항소심 33건과 상고심 19건을 합산한 52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17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6건으로 상소심의 82.7%가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승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가 4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가 5건으로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17.3%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72.8%였고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27.2%였다. 상고심의 경우 19건 모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구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항소심	33 (100.0)	12 (36.4)	12 (36.4)	4 (12.1)	5 (15.1)
상고심	19 (100.0)	5 (26.3)	14 (73.7)		
합계	52 (100.0)	17 (32.7)	26 (50.0)	4 (7.7)	5 (9.6)
		43 (82.7)		9 (17.3)	

※ ( )안의 숫자는 %

## 3. 청구별 결과

청구별 원고승소율 정정청구 31.4%, 반론청구 69.2%, 손해청구 36.4%

한 사건에서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들을 우선 매체별로 분류한 후, 다시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판 결과를 살펴보았다. 청구별 원고승소율은 기사삭제청구가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도금지청구 75.0%, 반론보도청구 69.2%, 손해배상청구 36.4% 순이었다. 정정보도청구는 31.4%로 원고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사과문 게재 청구가 5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표 2-3〉 청구별 결과

청구명	원고승	원고패	계
정정보도	33 (31.4)	72 (68.6)	105 (100.0)
반론보도	9 (69.2)	4 (30.8)	13 (100.0)
손해배상	55 (36.4)	96 (63.6)	151 (100.0)
기사삭제	5 (83.3)	1 (16.7)	6 (100.0)
보도금지	3 (75.0)	1 (25.0)	4 (100.0)
사과		5 (100.0)	5 (100.0)
<b>합계</b>	<b>105 (37.0)</b>	<b>179 (63.0)</b>	<b>284 (100.0)</b>

※ ( )안의 숫자는 %

## 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에 따른 원고승소율은 명예훼손 42.3%, 재산권 침해 53.8%로 나타나

판결문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 42.3%, 재산권 침해 53.8%, 초상권 침해 66.7%로 나타났다. 그 외 재산권, 명예와 초상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초상권과 음성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에서 원고승소율이 100.0%로 나타났지만 건수가 적어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기타 침해유형 사례로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를 시청함으로써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어 국민으로서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례<sup>1)</sup>, 전교조 명단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사례<sup>2)</sup>, 신문사 소유의 전광판을 촬영한 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가상 뉴스를 제작,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전광판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sup>3)</sup> 등이 있었다.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284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명예	33 (42.3)	45 (57.7)	78 (100.0)
명예/모욕	1 (25.0)	3 (75.0)	4 (100.0)
명예/사생활		2 (100.0)	2 (100.0)
명예/재산권	1 (100.0)		1 (100.0)
명예/초상	3 (100.0)		3 (100.0)
명예/초상/모욕	1 (100.0)		1 (100.0)
명예/초상/사생활		1 (100.0)	1 (100.0)
재산권	7 (53.8)	6 (46.2)	13 (100.0)
초상	2 (66.7)	1 (33.3)	3 (100.0)
초상/음성	1 (100.0)		1 (100.0)
초상/음성/사생활/모욕	1 (100.0)		1 (100.0)
사생활	2 (50.0)	2 (50.0)	4 (100.0)
저작권	2 (66.7)	1 (33.3)	3 (100.0)
기타	1 (33.3)	2 (66.7)	3 (100.0)
<b>합계</b>	<b>55 (46.6)</b>	<b>63 (53.4)</b>	<b>118 (100.0)</b>

※ ( )안의 숫자는 %

## 5. 원고유형별 결과

공적 인물, 국가기관 승소율 각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원고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살펴보니 공적 인물과 국가기관의 승소율이 각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단체가 45.5%, 기업은 44.4%의 승소율을 보였다. 언론사의 경우, 26.7%로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공직자	7 (38.9)	11 (61.1)	18 (100.0)
공적 인물	10 (83.3)	2 (16.7)	12 (100.0)
일반인	20 (42.6)	27 (57.4)	47 (100.0)
국가기관	5 (83.3)	1 (16.7)	6 (100.0)
일반단체	5 (45.5)	6 (54.5)	11 (100.0)
기업	4 (44.4)	5 (55.6)	9 (100.0)
언론사	4 (26.7)	11 (73.3)	15 (100.0)
<b>합계</b>	<b>55 (46.6)</b>	<b>63 (53.4)</b>	<b>118 (100.0)</b>

※ ( )안의 숫자는 %

〈표 2-6〉 공적 인물에 대한 결과

공적인물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정치인		1 (100.0)	1 (100.0)
연예인	1 (100.0)		1 (100.0)
기업가	1 (100.0)		1 (100.0)
언론인	1 (100.0)		1 (100.0)
기타	7 (87.5)	1 (12.5)	8 (100.0)
<b>합계</b>	<b>10 (83.3)</b>	<b>2 (16.7)</b>	<b>12 (100.0)</b>

※ ( )안의 숫자는 %

## 6. 매체유형별 결과

### 뉴스통신, 월간지 상대 원고승소율 높게 나타나

분석대상판결 118건 중 여러 언론사가 공동 피소된 사건을 매체별로 각 구분한 172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통신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간지 60.0%, 방송 46.4%, 인터넷매체 45.6%, 일간신문 37.2%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종합일간지의 원고승소율이 63.6%인 것에 비해 중앙종합일간지는 26.7%로 낮게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대상으로 한 원고승소율은 47.8%로 나타났으며, 지역방송, 케이블, 라디오의 경우에는 건수가 각 1~2건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는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47.4%, 인터넷신문은 42.5%로 분석됐다.

〈표 2-7〉 매체유형별 재판 결과

매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일간신문	16 (37.2)	27 (62.8)	43 (100.0)
주간신문	5 (35.7)	9 (64.3)	14 (100.0)
월간지	3 (60.0)	2 (40.0)	5 (100.0)
방송	13 (46.4)	15 (53.6)	28 (100.0)
뉴스통신	2 (66.7)	1 (33.3)	3 (100.0)
인터넷매체	36 (45.6)	43 (54.4)	79 (100.0)
<b>합계</b>	<b>75 (43.6)</b>	<b>97 (56.4)</b>	<b>172 (100.0)</b>

※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유형별 재판 결과

일간지 유형별	원고승	원고패	계
중앙종합	8 (26.7)	22 (73.3)	30 (100.0)
지역종합	7 (63.6)	4 (36.4)	11 (100.0)
스포츠	1 (50.0)	1 (50.0)	2 (100.0)
<b>합계</b>	<b>16 (37.2)</b>	<b>27 (62.8)</b>	<b>43 (100.0)</b>

※ ( )안의 숫자는 %

〈표 2-9〉 방송 유형별 재판 결과

방송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지상파	11 (47.8)	12 (52.2)	23 (100.0)
지역방송	1 (50.0)	1 (50.0)	2 (100.0)
케이블	1 (50.0)	1 (50.0)	2 (100.0)
라디오		1 (100.0)	1 (100.0)
<b>합계</b>	<b>13 (46.4)</b>	<b>15 (53.6)</b>	<b>28 (100.0)</b>

※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유형별 재판 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인터넷신문	17 (42.5)	23 (57.5)	40 (100.0)
언론사닷컴	18 (47.4)	20 (52.6)	38 (100.0)
포털	1 (100.0)		1 (100.0)
<b>합계</b>	<b>36 (45.6)</b>	<b>43 (54.4)</b>	<b>79 (100.0)</b>

※ ( )안의 숫자는 %

## 7. 보도유형별 결과

### 보도유형별 원고승소율

방송 외 매체 스트레이트기사 대상 45.1%, 방송매체 뉴스 대상 33.3%

분석 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172건을 방송 외 매체 144건, 방송 매체 28건으로 각 분류한 후, 보도유형에 따른 재판결과를 살펴보았다. 방송을 제외한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등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는 보도유형은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원고승소율은 45.1%로 나타났다. 방송매체의 보도유형에 따른 원고승소율은 뉴스가 33.3%, 시사·교발프로그램이 50.0%였다.

〈표 2-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스트레이트	51 (45.1)	62 (54.9)	113 (100.0)
스트레이트/사설	1 (16.7)	5 (83.3)	6 (100.0)
스트레이트/인터뷰	1 (100.0)		1 (100.0)
사설	3 (30.0)	7 (70.0)	10 (100.0)
칼럼	1 (50.0)	1 (50.0)	2 (100.0)
인터뷰		2 (100.0)	2 (100.0)
인터뷰/칼럼		2 (100.0)	2 (100.0)
사진	1 (100.0)		1 (100.0)
광고	3 (75.0)	1 (25.0)	4 (100.0)
기타	1 (33.3)	2 (66.7)	3 (100.0)
<b>합계</b>	<b>62 (43.1)</b>	<b>82 (56.9)</b>	<b>144 (100.0)</b>

※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방송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뉴스	4 (33.3)	8 (66.7)	12 (100.0)
시사·고발	5 (50.0)	5 (50.0)	10 (100.0)
교양·정보	3 (100.0)		3 (100.0)
드라마	1 (50.0)	1 (50.0)	2 (100.0)
교양·정보 / 드라마		1 (100.0)	1 (100.0)
<b>합계</b>	<b>13 (46.4)</b>	<b>15 (53.6)</b>	<b>28 (100.0)</b>

※ ( )안의 숫자는 %

## 제4장

# 손해배상청구 사건

분석대상 판결 118건 중 피고가 여러 언론사인 경우 각 매체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청구별로 분류한 건수는 284건이었다. 청구건수 284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 151건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사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을 분석함에 있어 평균액의 경우, 건수가 매우 적은 최고액 또는 최저액이 평균액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쳐 중심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액 또는 인용액의 중앙액<sup>1)</sup>과 최빈액<sup>2)</sup>을 함께 조사하였다.

또, 원고가 다수인 경우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에 합산하였다.

##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36.4%

손해배상청구 사건 151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55건으로 원고승소율은 36.4%로 나타났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재판 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151 (100.0)	55 (36.4)	96 (63.6)

※( )안의 숫자는 %

1) 중앙액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2) 최빈액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 2. 청구액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평균은 1억 8,374만 원, 중앙액은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대상으로 원고의 청구액 평균과 중앙액, 최고액, 최저액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8,374만 원이었고, 중앙액과 최저액은 각 5천만 원이었다. 한편, 전체 손해배상청구 151건 중 1억 원 이상인 고액 청구 사건이 54건(35.8%)을 차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30억 원, 최저액은 7,844원이었다.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건수	청구액(원)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51		183,744,076	50,000,000	50,000,000	7,844	3,000,000,000

## 3. 인용액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액은 2,711만 원, 중앙액은 1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151건 중 청구취지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55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았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2,711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으로 평균액이 중앙액의 약 2.7배 정도였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5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3억 원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했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고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sup>3)</sup>

한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55건 중 항소심 판결은 19건, 상고심 판결이 3건이었다. 위 상소심 판결 22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항소심 중 원심 판결의 인용액을 유지한 경우가 9건이었고, 증액한 경우(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번복한 경우 포함)가 7건, 감액한 경우가 3건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의 경우 3건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0가합23150 판결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건수 \ 인용액(원)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55	27,115,633	10,000,000	5,000,000	1,500,000	300,000,000

##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 원 이하가 40.0%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 55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내 범위인 경우가 각 18.2%로 나타났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건수 \ 인용액(원)	5백만 이하	5백만 초과 ~ 1천만	1천만 초과 ~ 2천만	2천만 초과 ~ 5천만	5천만 ~
55 (100.0)	22 (40.0)	10 (18.2)	10 (18.2)	9 (16.4)	4 (7.2)

※ ( )안의 숫자는 %

## 5.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 26.5%

손해배상사건 151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하였다. 침해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26.5%로 나타났으며, 인용액의 중앙액은 5백만 원이었다. 재산권 침해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57.1%, 인용액의 중앙액은 2천만 원이었다. 한편, 명예훼손에 비해 초상권과 사생활 등 다른 인격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원고승소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기타 사례 중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sup>4)</sup>의 인용액이 2억 6,856만 원으로 인용액 평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4) 전교조 교직원 명단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표 3-5〉 손해배상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명예	98	26	26.5	21,961,538	5,000,000
명예/모욕	6	1	16.7	5,000,000	5,000,000
명예/사생활	2	0	0	0	0
명예/재산권	1	1	100.0	11,000,000	11,000,000
명예/초상	5	5	100.0	9,200,000	10,000,000
명예/모욕/초상	1	1	100.0	5,000,000	5,000,000
명예/사생활/초상	1	0	0	0	0
재산권	21	12	57.1	20,983,316	20,000,000
초상	3	2	66.7	6,000,000	6,000,000
초상/음성	1	1	100.0	7,000,000	7,000,000
초상/모욕/사생활/음성	1	1	100.0	90,000,000	90,000,000
사생활	5	2	40.0	10,000,000	10,000,000
저작권	3	2	66.7	102,000,000	102,000,000
기타	3	1	33.3	268,560,000	268,560,000
<b>합계</b>	<b>151</b>	<b>55</b>	<b>36.4</b>	<b>27,115,633</b>	<b>10,000,000</b>

## 6.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인용액의 중앙액은 950만 원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공적 인물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직자가 34.6%, 일반인은 37.5%로 나타났다. 단체의 경우, 기업의 원고승소율이 45.5%로 나타난 반면, 언론사는 4.8%로 낮게 나타났다.

손해배상의 원고유형별 인용액을 중앙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니, 일반인이 950만 원, 공직자가 1천만 원, 공적인물은 1천 5백만 원이었다. 단체의 경우, 일반단체가 1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업이 1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과 언론사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각 1건으로 인용액은 각 5백만 원이었다.

〈표 3-6〉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개 인	공직자	26	9	34.6	10,666,667	10,000,000
	공적 인물	14	10	71.4	14,200,000	15,000,000
	일반인	64	24	37.5	36,491,658	9,500,000
단 체	국가기관	1	1	100.0	5,000,000	5,000,000
	일반단체	14	5	35.7	64,912,000	18,000,000
	기업	11	5	45.5	8,600,000	10,000,000
	언론사	21	1	4.8	5,000,000	5,000,000
합계		151	55	36.4	27,115,633	10,000,000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정치인	1	0	0	0	0
연예인	2	1	50.0	5,000,000	5,000,000
기업가	1	1	100.0	15,000,000	15,000,000
언론인	1	0	0	0	0
기타 유명인	9	8	88.9	15,250,000	15,000,000
합계	14	10	71.4	14,200,000	15,000,000

## 7. 손해배상청구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인용액의 중앙액 지상파방송이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아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20.7%, 지상파방송이 36.8%, 인터넷매체가 39.4%로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인용액의 중앙액은 지상파방송이 3,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앙종합일간지가 1,250만 원, 인터넷매체 1,05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3-8〉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증액액(원)
일간	중앙종합		29	6	20.7	13,333,333	12,500,000
	지역종합		8	5	62.5	7,900,000	5,000,000
	스포츠		2	1	50.0	5,000,000	5,000,000
	소계		39	12	30.8	10,375,000	10,000,000
방송	지상파		19	7	36.8	84,142,857	30,000,000
	지역방송		1	0	0	0	0
	케이블		2	1	50.0	90,000,000	90,000,000
	라디오		1	0	0	0	0
	소계		23	8	34.8	84,875,000	35,000,000
주간신문			12	4	33.3	4,500,000	5,000,000
월간지			5	3	60.0	6,333,333	5,000,000
뉴스통신			1	0	0	0	0
인터넷			71	28	39.4	23,244,993	10,500,000
합계			151	55	36.4	27,115,633	10,000,000

##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사건에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율은 62.7%로 나타나

손해배상청구 151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75건(49.7%)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 이 중 피고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경우는 47건(62.7%)이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승소율 63.6%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3-9〉 손해배상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건수	언론인 피고 사건	언론인 승	언론인 패
151	75 (100.0)	47 (62.7)	28 (37.3)

※ ( )안의 숫자는 %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76.0%

언론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상당성을 위법성 조각 사유<sup>5)</sup>로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151 중 기각(원고 패소)된 96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본 결과, 공익성 또는 보도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73건(76.0%)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보도내용에 사실의 적시가 없어 기각한 사례가 11건(11.4%)이었고,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아 기각한 경우가 6건(6.3%), 보도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경우 2건<sup>6)</sup> 등이 있었다.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32	33.3
진실성/상당성	9	9.4
진실성/상당성/공익	1	1.0
진실성/상당성/불특정	1	1.0
진실성/상당성/사실적시 없음	2	2.1
진실성/사실적시 없음	2	2.1
상당성	26	27.1
사실적시 없음	11	11.4
불특정	6	6.3
기타	6	6.3
<b>합계</b>	<b>96</b>	<b>100.0</b>

5)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6)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60307 판결

##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31.4%

분석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눈 건수 284건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105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33건으로 원고승소율은 31.4%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1〉 정정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105 (100.0)	33 (31.4)	72 (68.6)

※( )안의 숫자는 %

## 2. 정정보도청구 사건 기각사유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61.1%를 차지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 72건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실성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44건(61.1%)이었고,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가 없어 기각한 경우가 13건(18.1%),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9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41	56.9
진실성/사실적시 없음	3	4.2
상당성	9	12.5
사실적시 없음	13	18.1
평가저하 아님	1	1.3
불특정	3	4.2
기타	2	2.8
<b>합계</b>	<b>72</b>	<b>100.0</b>

###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69.2%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13건으로 원고 승소 사건이 9건, 원고승소율은 69.2%로 나타났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13 (100.0)	9 (69.2)	4 (30.8)

※( )안의 숫자는 %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반론보도청구 사건 13건 중 기각된 사건은 4건이었다. 기각 사유는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원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어 기각된 경우가 2건,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이어서 기각된 경우가 2건이었다.

##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2012년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40건이다. 이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8건, 주간신문 3건, 월간지 2건, 방송 7건, 뉴스통신 2건, 인터넷매체 18건으로 나타났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별로는 정정보도가 31건, 반론보도 8건, 정정 및 반론보도 1건이었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해 보았다.

〈표 4-4〉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	계
일간신문	7	1		8
주간신문	2	1		3
월간지	2			2
방송	5	2		7
뉴스통신	2			2
인터넷매체	13	4	1	18
<b>합계</b>	<b>31</b>	<b>8</b>	<b>1</b>	<b>40</b>

### 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원보도와 같은 지면(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82.5%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33건(8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는 7건(17.5%)이었다. 이는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6항에서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 구체적인 보도위치를 살펴보면,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이 8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6건, 인터넷매체의 경우 메인에 제목을 게시하고 보도내용은 하이퍼링크로 게시하도록 한 경우가 16건으로 각각 건수가 가장 많았다.

〈표 4-5〉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건수	비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33	82.5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7	17.5
합계	40	100.0

〈표 4-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8	20.0
	1면외	5	12.5
방송	첫머리	6	15.0
	후반	1	2.5
	기타	1	2.5
인터넷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16	40.0
	VOD 영상 하단에 내용 게시	3	7.5
합계		40	100.0

##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이,  
 보도본문의 길이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가장 많아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하였다. 보도 제목의 경우, '정정보도문'이나 '반론 보도문'으로 달도록 한 경우가 18건(45.0%),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형식이 15건(37.5%)으로 나타났다.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15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이하가 11건(27.5%), 500자 초과가 8건(20.0%), 400자 초과 500자 이하가 6건(15.0%)으로 나타났다.

〈표 4-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건수	비율(%)
정정보도문	14	35.0
반론보도문	4	10.0
…에 대한 정정보도문	11	27.5
…에 대한 반론보도문	4	10.0
…에 대한 정정보도문 / …에 대한 반론보도문	1	2.5
바로잡습니다	4	10.0
기타	2	5.0
<b>합계</b>	<b>40</b>	<b>100.0</b>

〈표 4-8〉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건수	비율(%)
300자 이하	11	27.5
301~400자	15	37.5
401~500자	6	15.0
500자 초과	8	20.0
<b>합계</b>	<b>40</b>	<b>100.0</b>

# 제6장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 1. 조정신청 비율

언론관련 소송사건 중 약 3분의 1은 위원회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172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284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보았다.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38.0%로 대략 3건에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비율을 청구권별로 보면 정정보도청구 50.5%, 반론보도청구 76.9%, 손해배상청구 26.5% 등으로 나타났다.

〈표 5-1〉 조정신청 비율

청구명	소송건수	조정신청 건수	조정신청 비율(%)
정정보도	105	53	50.5
반론보도	13	10	76.9
손해배상	151	40	26.5
기사삭제	6	2	33.3
사과	5	3	60.0
보도금지	4	0	0
합계	284	108	38.0

##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재판 결과 비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59.1%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 58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재판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위원회 조정 결과별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22건으로 원고승소는 13건(59.1%), 원고패소는 9건(40.9%)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승소율이 90.9%인 반면,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승소율은 20.0%였다.

한편 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던 27건의 경우,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4건(51.9%)이었으며, 위원회 조정 결과 기각,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소송결과 모두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재판 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재판 결과	계	원고승	원고패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10	2	8
	피신청인 이의신청		11	10	1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1	1	0
조정불성립결정			27	14	13
기각			4	0	4
각하			5	0	5
합계			58	27	31

### 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위원회 손해배상 조정액의 중앙액 150만 원,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1,000만 원

2012년 한 해,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은 189만 원, 중앙액은 150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은 2,711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액의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두 기관의 금전배상액을 비교해보았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의 조정액 평균은 175만 원, 중앙액은 200만 원이었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은 2,196만 원, 중앙액은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액을 비교해보면,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이 132만 원, 중앙액이 150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과 중앙액은 각 6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청구사건에 대해 두 기관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의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청구사건을 각자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므로, 이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54	1,895,000	1,500,000	3,000,000	300,000	10,000,000
인용액	55	27,115,633	10,000,000	5,000,000	1,500,000	300,000,000

〈표 5-4〉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26	1,750,000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0
인용액	26	21,961,538	5,000,000	50,000,000	1,500,000	300,000,000

〈표 5-5〉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19	1,320,000	1,500,000	500,000	300,000	3,000,000
인용액	2	6,000,000	6,000,000	- <sup>1)</sup>	3,000,000	9,000,000

1) 분석대상 판결 중 초상권 침해만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여, 최빈액을 산정할 수가 없었음.

##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118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2-01-06	2009가단350846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2	2012-01-06	2010가합3752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대한민국 외 1명	기각
3	2012-01-13	2011나3885	광주고등	2심	정정/손배	(주) 전광일보	인용
4	2012-01-13	2011나40856	서울고등	2심	손배	(주) 뉴시스	기각
5	2012-01-18	2009가합55322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3명	기각
6	2012-01-19	2011가합4422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주) 에스비에스	인용
7	2012-01-20	2011가합1900	청주지방	1심	정정/기사삭제	(주) 청주방송	인용
8	2012-01-26	2011다88047	대법원	3심	손배	정○○	기각
9	2012-01-27	2011나11298	대전지방	2심	손배	(주) 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10	2012-01-27	2011나3651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인용
11	2012-02-02	2010가합1844	서울남부	1심	손배/보도금지	(주) 문화방송 외 3명	기각
12	2012-02-03	2011나77704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사 외 3명	기각
13	2012-02-07	2011가단9893	인천지방 부천지원	1심	손배	권○○ 외 1명	기각
14	2012-02-07	2011가단43086	서울남부	1심	손배	(주) 에스비에스	인용
15	2012-02-10	2011가합13593	서울서부	1심	정정	한겨레신문 (주)	인용
16	2012-02-10	2011나3907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매일경제신문사 외 1명	인용
17	2012-02-10	2011나59348	서울고등	2심	손배	이○○ 외 1명	인용
18	2012-02-14	2010가단83902	서울남부	1심	손배	(주) 경향복스 외 2명	인용
19	2012-02-17	2009나65081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기각
20	2012-02-23	2010가단418748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조선일보사	인용
21	2012-02-23	2010가합23150	서울남부	1심	손배	(주) 에스비에스	인용
22	2012-03-09	2011나89080	서울고등	2심	손배/기사삭제	(주) 디스패치뉴스그룹 외 6명	인용
23	2012-03-15	2011다109111	대법원	3심	정정/손배/사 과	(주) 기독교텔레비전	인용
24	2012-03-15	2011다112025	대법원	3심	손배	(주) 문화방송	인용
25	2012-03-22	2011나1717	광주고등(전주)	2심	정정/손배	(주) 전북중앙신문 외 1명	인용
26	2012-03-23	2011나77100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주) 외 2명	인용
27	2012-03-30	2012라407	서울고등	2심	정정	(주) 뉴시스	인용
28	2012-04-04	2011가합104944	서울중앙	1심	정정	김○○ 외 1명	기각
29	2012-04-04	2011가합12741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주) 외 3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30	2012-04-12	2011가합20929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 미디어오늘	인용
31	2012-04-12	2012다3234	대법원	3심	손배	박○○	기각
32	2012-04-12	2012다8093	대법원	3심	손배	이피씨라인 (주) 외 1명	인용
33	2012-04-13	2011나3286	창원지방	2심	손배	(주) 중앙일보사 외 1명	인용
34	2012-04-17	2010가단57976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35	2012-04-20	2011가단386138	서울중앙	1심	손배	오○○ 외 1명	기각
36	2012-04-27	2011가합13890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주) 시사저널사	인용
37	2012-05-09	2010다12630	대법원	3심	손배	오○○ 외 4명	기각
38	2012-05-09	2011가합94276	서울중앙	1심	손배	대한변호사협회 외 2명	기각
39	2012-05-10	2010다15660	대법원	3심	손배	(주)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40	2012-05-10	2012다20093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 오마이뉴스 외 1명	기각
41	2012-05-10	2012다20109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 오마이뉴스 외 1명	기각
42	2012-05-11	2011나4689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3명	인용
43	2012-05-16	2009가합57915	서울중앙	1심	손배	박○○ 외 4명	기각
44	2012-05-16	2011가합11628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주) 외 3명	기각
45	2012-05-18	2011나67097	서울고등	2심	손배	조○○ 외 1명	인용
46	2012-05-24	2011가합100.37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안○○	인용
47	2012-05-30	2011가합958	창원지방 진주지원	1심	정정/손배	(주) 엠비씨경남	기각
48	2012-05-30	2011가합3315	부산지방	1심	손배	(주) 국제신문 외 2명	기각
49	2012-05-30	2011가합48808	서울중앙	1심	손배	이○○ 외 2명	기각
50	2012-06-01	2012나8354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겨레신문 (주) 외 1명	인용
51	2012-06-01	2012나9241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손배	(주) 중앙일보사 외 2명	인용
52	2012-06-07	2012마597	대법원	3심	정정	(주) 뉴시스	인용
53	2012-06-08	2011가합65346	서울중앙	1심	손배	나○○ 외 1명	기각
54	2012-06-13	2012가합4911	서울중앙	1심	손배	안○○ 외 1명	인용
55	2012-06-14	2010다20181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56	2012-06-14	2011가합1044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김○○	인용
57	2012-06-14	2011가합11584	서울북부	1심	손배/기사삭제/보도금지	(주) 뉴스타운 외 2명	인용
58	2012-06-14	2011가합13037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김○○	인용
59	2012-06-15	2012나391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60	2012-06-20	2011가합127404	서울중앙	1심	손배	최○○ 외 1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61	2012-06-22	2011가단43570	수원지방 안산지원	1심	손배	김○○	인용
62	2012-06-22	2011나9696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미디어오늘	기각
63	2012-06-26	2012다30885	대법원	3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기각
64	2012-06-28	2012다1030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외 1명	인용
65	2012-07-04	2011가합13292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에스비에스 외 5명	기각
66	2012-07-05	2011나11263	창원지방	2심	손배	박○○ 외 1명	기각
67	2012-07-13	2012나19309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주) 에스비에스	인용
68	2012-07-19	2009가합157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 코리아메디케어	인용
69	2012-07-19	2011가합10952	서울서부	1심	손배	(주) 와이티엔 외 1명	기각
70	2012-07-26	2012나284	서울서부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71	2012-08-10	2011나3469	부산고등(창원)	2심	정정/손배	(주) 매일신문사	인용
72	2012-08-16	2011나2273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	기각
73	2012-08-21	2011가단19863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이○○ 외 3명	기각
74	2012-08-22	2011가합125521	서울중앙	1심	반론	(주) 크리스천투데이	인용
75	2012-08-22	2012가합2651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최○○ 외 4명	인용
76	2012-08-23	2011가합15971	서울서부	1심	정정	(주) 시사저널사	기각
77	2012-08-23	2011다40373	대법원	3심	손배	(주) 참언론 외 1명	기각
78	2012-08-23	2011나20721	의정부지방	2심	손배	경기도시공사 외 2명	기각
79	2012-09-06	2012가합13876	수원지방	1심	정정/사과	(주) 경기일보 외 1명	인용
80	2012-09-11	2011가합8405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손배	김○○	인용
81	2012-09-12	2012가합3283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주)	기각
82	2012-09-12	2012가합3285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한국전기신문사	기각
83	2012-09-12	2012가합4415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네오뉴스	기각
84	2012-09-13	2011가합18643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85	2012-09-13	2012가단11998	수원지방 안양지원	1심	손배	권○○○ 외 3명	인용
86	2012-09-19	2011가단102015	서울남부	1심	손배	(주) 에스비에스	인용
87	2012-09-19	2012가합27310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디지털조선일보 외 5명	기각
88	2012-09-21	2012나38409	서울고등	2심	정정	(주) 에스헬스	기각
89	2012-09-26	2011가합68703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 외 4명	기각
90	2012-09-27	2011가합10564	서울남부	1심	손배	(주) 뉴스프라임 외 7명	인용
91	2012-09-27	2012다6251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92	2012-09-28	2011가합14797	수원지방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93	2012-10-10	2011가합127350	서울중앙	1심	손배	디지털와이티엔 (주) 외 3명	인용
94	2012-10-10	2012가합5371	서울북부	1심	정정/반론	추○○	인용
95	2012-10-11	2011가합14931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손배	(주) 한국일보사 외 2명	인용
96	2012-10-11	2011가합14948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손배	(주) 오마이뉴스 외 3명	인용
97	2012-10-11	2011가합2434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98	2012-10-25	2011나15037	서울남부	2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 외 4명	기각
99	2012-10-25	2012가단7881	창원지방 진주지원	1심	손배	(주) 경남신문사 외 1명	기각
100	2012-10-26	2011가합10637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손배	이○○ 외 3명	기각
101	2012-10-26	2011나9916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오마이뉴스 외 1명	인용
102	2012-10-26	2012가합2267	수원지방 안양지원	1심	정정/손배/사과	(주) 장애인신문 외 2명	인용
103	2012-11-01	2011가합15231	서울남부	1심	손배/기사삭제/사과	(주) 에스비에스 외 2명	기각
104	2012-11-01	2011가합2362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인용
105	2012-11-09	2011가합42930	서울중앙	1심	손배	김○○ 외 7명	인용
106	2012-11-15	2011다8678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107	2012-11-15	2012다65713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 미디어오늘	기각
108	2012-11-22	2012가합14181	서울남부	1심	정정	신아매일 (주)	기각
109	2012-11-23	2012나48222	서울고등	2심	손배	대한변호사협회 외 2명	기각
110	2012-11-30	2012나56018	서울고등	2심	손배	최○○ 외 1명	기각
111	2012-12-07	2012나14403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대한민국 외 1명	기각
112	2012-12-07	2012나60307	서울고등	2심	손배	(주) 뉴스타운 외 2명	기각
113	2012-12-13	2012다85021	대법원	3심	손배	경기도시공사 외 2명	기각
114	2012-12-14	2012가합5957	서울서부	1심	정정/반론/손배	오마이뉴스	인용
115	2012-12-20	2012나17150	서울고등	2심	손배/보도금지	(주) 문화방송 외 3명	인용
116	2012-12-21	2012가단632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정정/손배	고양신문	기각
117	2012-12-26	2012가단197397	서울중앙	1심	손배	건치신문 외 2명	기각
118	2012-12-27	2010다61793, 61809(병합)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재) 씨비에스 외 4명	기각